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고(알림)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및 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시행규칙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및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과 관련된 고시 개정사항입니다.

2. '15.12.23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우리본부에서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6.3.11.(금)까지 우리상황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고시 개정(안)	고시 수정(안)	수정사유(근거 등 포함)

붙임 :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신자 농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 방역관리과장), 시도 방역부서, 시군구 방역부서, 검역본부감, 검역본부을, 검역본부병, 가축질병방역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대한한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장

주무관	가축질병상황실 수의사무관	가축질병상황실장	전결 2016. 2. 17.
-----	------------------	----------	-----------------

협조자

시행 가축질병상황실-854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울곡동 960, 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www.qia.go.kr>

전화번호 054-912-0362 팩스번호 054-912-0383 / doitqt@korea.kr / 대국민 공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07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전문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공포, '15.12.23. 시행)됨.
-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가. 보수교육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한 교육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목 신설(제5조제2항)
- 나.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종사자 유형 신설(제6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제6조제1항제7호)
- 다.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제10조, 별표 1)
- 라.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및 인증취소 삭제(제11조, 제12조)
 - 별지 6, 7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상황실 이호성, 전화 : 054-912-0362, Fax : 054-912-0383, E-mail : doitqt@korea.kr,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우편번호 : 3966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호, '13.3.23.)」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0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정 2012.12.1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2호

개정 2016.2.0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차량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제3조(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또는 등록된 시·군·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시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
- ②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30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

-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②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협 중앙회로 한다.

②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인력현황 및 교육장별 시설 장비현황을 첨부하여 교육총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춘 경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
2.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9조(교육기관 관리·감독) ①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총괄기관에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

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열람 등

제11조(정보수집)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 등) ①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16.2.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력 현황

1. 교육관리 및 교육시행 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비고

2. 강사인력

연번	성명	입사일	담당과목	자격	비고

※ 구비서류 : 강사 자격 관련 자격증 또는 증명서

210mm × 297mm(신문용지 540g/m²)

[별지 제5호서식]

교육장별 시설 장비현황

구분 교육 장명	전용 면적		강의실			기숙사			식당			교육장비		비고
	수	면적	수용 인원	수	형태	수	수용 인원	수	수	면적	장비명	수량		
	계			계			계		계					

210mm × 297mm(신문용지 540g/m²)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제10조 관련)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구조

항목	주요사항
제품 구조 일반	<p>가. 차량무선인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본체,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이하 "GPS"라 한다)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차량용 전원 연결선으로 구성된다.</p> <p>나. 장치 본체의 크기는 가로(110) * 세로(65) * 두께(30) mm, 장치 본체의 무게는 130g을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다. 장치는 차량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소형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p>
외형 및 케이스	<p>가. 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단단하고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p> <p>나. 장치의 외부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하고 조립에 필요한 볼트머리, 너트,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홈 등의 노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외부의 표면은 사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p> <p>다. 장치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해 및 제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에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p>
음향	<p>가. 장치는 음향 설비를 내장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음량 조절 단추를 갖추어야 한다.</p>
상황표시 점등	<p>가. 장치는 2개 이상의 상황표시 점등을 갖추어야 하며, 점등 색깔, 켜짐/꺼짐(ON/OFF) 동작을 조절하여 장치의 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나. 장치는 외부에서 전원상황, GPS상황, 이동통신상황, 방문상황, 정보 전송상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점등을 갖추어야 한다.</p>
GPS	<p>가. GPS 수신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안테나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질의 GPS를 장착해야 한다.</p> <p>(1) 2015년 이전 : Assisted-GPS (2) 2016년 이후 : Differential-GPS</p> <p>나. 외장형인 경우 GPS 안테나 연결선 길이는 50cm를 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p>
이동통신 안테나	<p>가. 이동통신 안테나는 본체에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p>
전원	<p>가. 장치는 설치의 용이성과 상시 전원공급을 위하여 차량 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p>

항목	주요사항
	나. 입력전원 범위는 7V ~ 36V DC 이어야 한다.
보조 전원 (배터리)	가. 장치는 입력전원이 꺼짐(OFF) 상태가 되어도 차량출입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보조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조 전원 용량은 최소 300mAh 이상이어야 한다.
저장용량 부품 (메모리)	가. 장치는 차량출입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나. 장치는 차량출입정보를 저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1) 2015년 이전 : 저장용량 NAND Flash 128 MB 이상 (2) 2016년 이후 : 저장용량 NAND Flash 512 MB 이상
자료 입출력 (DATA I/O)	가. 장치는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장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 인터페이스	가. 장치는 별도로 외부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2015년 이전 : 직렬(Serial) 단자를 2개 이상 (2) 2016년 이후 : 2개이상 연결가능한 WiFi AP, 직렬(Serial) 단자 1개
농장등록 단추	가. 장치는 사용자가 신규농장 등 미등록농장에 진입시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농장등록 누름단추를 갖추어야 한다
USIM (가입자 식별을 위해 GPS에 내장하는 부품)	가. 장치는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본체를 해체하지 않고 USIM을 교체할 수 있는 슬롯형태의 구조 또는 본체에 삽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다만, USIM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목적으로 GPS 본체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USIM은 차량의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초기화 단자	가. 장치는 필기구 등과 같은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초기화 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2. 장치의 기능

기능의 종류	주요기능
축산관계 시설 방문정보 수집 기능	가. 장치는 다양한 방식의 농장 설정 방식을 이용하여 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1) 2015년 이전 : Circle/Multi-circle (2) 2016년 이후 : Polygon/Multi-polygon/Circle/Multi-circle 나. 장치는 다음의 예외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농장에 대하여 재방문 시간 이내에는 방문정보가 중복 전송되지 않아야 한다. (2) 진입 후 전원 On/Off 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방문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3) 중첩된 축산시설에 진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기능의 종류	주요 기능
	(4) Multi Zone 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문정보만 전송되어야 한다.
비정상 처리 기능	<p>가. 장치는 수집된 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 내부 메모리에 저장하였다가 정상적인 조건(통신환경, 기기 상태 등)이 되었을 때 재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p> <p>(1) 재전송 정보 종류 : 방문 정보, 신규 등록 정보, 선별 통제 정보, 차량 관제 보고 정보</p> <p>(2) 비 정상적인 조건 : 서버의 장애, 통신망 이상, 단말기기 장애, 기타</p>
GPS기능	<p>가. GPS 음영상태에서 최초 위치정보를 잡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p> <p>나. GPS 수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 보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측산관계 시설 정보 관리 기능	<p>가. 장치는 초기에 기초정보 전체를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외장 장치에서 입력,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나. 장치는 서버와의 연동 규격에 의하여 특정의 기초정보를 삭제, 수정, 추가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된 기초정보만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p> <p>다. 장치는 서버와의 연동 규격에 의하여 기초 정보 전체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라. 장치는 변경된 기초 정보 확인을 위하여 기초정보 요청 주기마다 서버에 기초 정보 변경유무를 확인하여 변경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단말기에 다운로드하여야 한다.</p>
이동경로 정보 관리 기능	<p>가. 단말기는 이동경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p> <p>(1) 내장 메모리에 최장 90일치의 이동경로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p> <p>(2) 현재의 위치 관제 측위 주기를 기준으로 저장하여야 한다.</p> <p>(3) 측위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p> <p>(4) 90일 이상의 경로 정보는 오래된 것부터 제거하여야 한다.</p> <p>나. 장치는 서버의 명령어에 의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이동경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p>
차량 관제 기능	<p>가. 2016년 이후 장치는 4 가지 형태의 관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 <p>(1) 4 가지 관제 방식은 긴급, 지역, 유형, 일반관제로 구성된다.</p> <p>(2) 4 가지 관제 방식 중 우선 순위는 긴급, 지역, 유형, 일반의 순으로 동작하여야 한다.</p> <p>(3) 장치가 지역별 관제 지역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긴급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관제 방식으로 동작하다가 지역을 벗어나면 원래의 관제 방식으로 복귀하여야 한다.</p>
선별통제 기능	<p>가. 단말기는 서버의 활성화/비활성화 기능에 따라 선별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나. 활성화 시에 단말기는 선별통제 DB를 서버와 연동하여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p>

기능의 종류	주요 기능
	<p>다. 비활성화 시에 단말기는 현재 수행 중인 선별통제 기능을 중지하여야 하고 선별통제 DB도 다운로드 받지 않아야 한다.</p> <p>라. 장치는 이동통제 초소 경계 지역 진입 시에 초소명을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p> <p>마. 장치는 이동통제 초소 지역을 진입 시에 초소명을 이용하여 음성안내를 하여야 한다.</p>
음성 안내 관리 기능	<p>가. 주요 기능동작에 대하여 서버와 연동하거나 자체적으로 음성안내가 가능하여야 하며, 서버의 지시에 따라 안내 문구를 추가·변경·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p> <p>나. 단말기는 서버에서 보내는 SMS 문자를 수신하여 실 시간으로 음성 안내 멘트를 방송하여야 한다.</p>
수동 전송 기능	<p>가. 사용자가 신규농장 등 미등록농장에 진입시 장치의 외부에서 농장등록 단추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차량출입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상황 표시 및 전송 기능	<p>가. 장치는 전원상황, GPS상황, 이동통신상황, 축산관계시설 진출입 상황 등을 점등(LED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장치는 차량출입정보가 서버에 정상적으로 수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원상황, GPS상황, 통신모뎀 상황 등이 일정 주기 또는 전원 꺼짐 전에 전송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p>다. 장치 구조에 따라 장치의 상황표시는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상황을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의 점등상태 및 표시를 명확히 구별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단말기 초기화 시</p> <p>(나) 통신 및 GPS 정상 시</p> <p>(다) 통신 및 GPS 장애 시</p> <p>(라) 정상적인 차량운행 시</p> <p>(마) 축산관계시설 진입 시(방문정보 전송 전)</p> <p>(바) 서버와 통신 상황(정보 전송/수송 중)</p> <p>(사) 축산관계시설 내 방문한 상황(방문정보 전송 성공 후)</p> <p>(아) 기타</p>
외부 기기 연결 단자 기능	<p>가. 장치는 필요 시 타 기기(예: 소 이력관리)와 연동할 수 있는 외부기기 연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장치는 자료 추적 등을 위한 외부기기 연결용 단자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p>
원격 업데이트 기능	<p>가. 장치는 F/W 버전에 대하여 단말기를 수거하지 않고 원격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나. 원격 업그레이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M2M 연동 규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p>
원격리셋	<p>o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서버의 명령에 의한 원격 리셋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p>

기능의 종류	주요기능
기능	
기타기능	가. 기타기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M2M 연동 규격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개체식별

- 가. 장치의 개체식별을 위해 장치의 표면에는 장치의 모델명, 인증번호, 회사명,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및 제조사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장치의 표면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이동통신사의 명칭과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